

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6년 12월 21일

- 회부일자 : 1996년 12월 21일

3. 제정이유

- 자연재해대책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
-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를 제정 재해대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○ 기금의 운용 관리

- 도지사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 (국채, 공채, 매입 또는 금융기관)으로 예탁 관리 하고
-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

5. 검토의견

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해대책 기금을 적립하며 적립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